

시청자미디어재단 재무감사 등 결과

□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'19. 9. 23. ~ 10. 11. (13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팀장 등 6명

□ 주요 감사사항

- 인건비·경비 등 기금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
- 계약(공사·용역·물품),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
- 회계에 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 등

※ 공공분야 채용비리 실태점검 포함 실시

□ 대상 기관현황

기관명	예산규모 (백만원)	직원수(명)		설립근거
		정원	현원	
시청자미디어재단	43,703*	225	221	방송법 제90조의2 (시청자미디어재단)

* 지역센터 분담금, 타기관 협약사업, 기부금 포함

□ 감사결과(처분요구)

일련 번호	조치구분	주요 지적사항	비 고
1	주의요구 (기관경고) 개선요구 통보	<p>법정수당의 성과연봉 재원 산입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(252시간)을 성과 연봉 재원으로 산입하여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하고, 성과 연봉에 포함된 8일분의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의 경우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, 초과근무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	
2	통보	<p>국고보조금 이월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,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기한 내에 재화의 입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방통위 승인없이 보조금 이월 집행 	
3	통보	<p>자산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재물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여 노후화 등으로 불용해야 할 자산들이 서류상으로 아직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불용처리를 못하고 있는 등 자산관리 부적정 	
4	통보	<p>자산 손·망실 처리절차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이후 손망실 보고 내역은 9건에 불과하였으나, 실제 178건(약 1억 5백만원)의 자산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등 손·망실 자산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 	
5	통보	<p>채용절차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건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에 대한 '평가 기준'을 인사위원회가 아닌 채용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인재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채용절차가 부적정 	
6	통보	<p>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약서 개선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경우 시험위원들의 제척사유에 대한 사전 인지가 어렵고, 제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척사유 발생시 반드시 회피토록 서약서 개선 필요 	
<p>주의요구 1건, 개선요구 1건, 통보 6건</p>			